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21
----------	-------

발의연월일 : 2026. 5. 12.

발 의 자 : 박성민·박준태·김형동
엄태영·박덕흠·고동진
이양수·김상훈·이인선
구자근·정동만·신성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친권자 및 보호자의 체포·구속·수용 등의 사유로 미성년 자녀 등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를 복지체계에 신속히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기관에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친권자나 보호자의 부재·연락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현행 직권신청 제도만으로 적시에 급여를 연계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검찰청 및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등 취약가구원에게 보호공백이 발생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여 취

약가구원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을 “심신미약, 심신상실 또는 미성년자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의2에 따라 통보된 가구로서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호자의 부재로 인하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판단한 가구

제11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검찰청법」 제2조에 따른 검찰청

6의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호공백 우려가구에 관한 통보) ① 경찰서의 장, 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호자의 체포, 구속, 수용, 장기 부재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공백 우려가구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연락 가능한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유무
3. 보호공백 발생 또는 우려의 사유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 연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범죄사실, 혐의내용, 수사경과, 형량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보호조치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로서 보호공백 우려가구의 발굴, 현장 확인, 긴급지원 연계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조사 결과 보호공백이 확인되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연계, 제5조에 따른 직권신청,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
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1.·2. (생략)

<신설>

② (생략)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
굴(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
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
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의2에 따라 통보된 가
구로서 미성년자, 65세 이상
인 사람, 장애인 또는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보호자의 부재로 인하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보장기관의 장
이 판단한 가구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7. ~ 11. (생략)

② ~ ⑥ (생략)

<신설>

----.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검찰청법」 제2조에 따른 검찰청

6의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7.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보호공백 우려가구에 관한 통보) ① 경찰서의 장, 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호자의 체포, 구속, 수용, 장기 부재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의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공백 우려가구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연락 가능한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유무

3. 보호공백 발생 또는 우려의 사유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 연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범죄사실, 혐의내용, 수사경과, 형량 등 지원대상자 발굴 및 보호조치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는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 12. (생략)

<신설>

② ~ ⑦ (생략)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생략)

<신설>

<신설>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로서 보호공백 우려가구의 발굴, 현장 확인, 긴급지원 연계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조사 결과 보호공백이 확인되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p>② · ③ (생략)</p>	<p><u>지원 연계, 제5조에 따른 직권 신청,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④ ·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	--